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1999년12월생)에 대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2. 29. ~ 2017. 1. 13.
2. 발급기간 : 2017. 1. 1. ~ 2017. 12. 31(12개월간)
3. 공고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1	고**	1999.12.28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2	박**	1999.12.12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3	김**	1999.12.24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37번길
4	김**	1999.12.19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5	김**	1999.12.22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64번길
6	조**	1999.12.2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7	은**	1999.12.18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24번길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발급기간 내에 오천읍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와 동행(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하시고, 6개월 이내 귀와 눈썹이 보이게 하여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장 (3\*4cm나 3.5\*4.5cm)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담당자 : 김동미      전화번호 054-270-6836 )



2016년 12월 29일